

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세칙(2023. 8. 1.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학생조교수당)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교육조교수당(Teaching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2. 학생연구조교수당(Research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학생행정조교수당(Staff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근로포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p>제5조(학생조교수당)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교육조교수당(Teaching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2. 학생연구조교수당(Research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학생행정조교수당(Staff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근로포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4. 위에 명시된 학생조교수당 이외의 학생조교수당 제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정
<p>제7조(학생조교수당 지급) ① 학생조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p>	<p>제7조(학생조교수당 지급) ① 학생조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p> <p>③ 수료생(전문연구요원 등)은 장학금 통계 산출 시에 재적생으로 본다.</p>	수정